

2022학년도 제1회 급식소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

2022. 6. 22.(수)

□ 협의 안건

1. 1학기 미등교기간 급식비 산정에 대한 협의
2. 기타협의

□ 안건 협의

1. 1학기 미등교기간 급식비 산정에 대한 협의

- 3월 2일 ~ 3월 11일 학교등교기간 급식이용 후 학교출입통제 및 상하이시 전체 봉쇄, 1학기 온라인 수업 결정으로 이 기간 동안의 급식이용이 불가능함.
- 급식업체에서는 학생급식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중 발생하지 않은 51%의 식자재구입비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.
- 나머지 49%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기타비용에 해당하는 31.39%는 고정비용이라 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임.
- 타학교의 경우 100% 환급이 된 학교, 또는 다음학기로 이월을 한 학교 등 여러 케이스가 존재함에 따라 참고를 한다면 좋겠음.
- 급식업체 계약당시 1,250명 식수로 계약되었고, 현재는 1,000명 정도의 식수로 고정비용의 지출은 계속되고 매출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임.
- 학부모의 입장은 51%의 식자재구입비는 당연히 100%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, 나머지 비용 중 고정비용인 31.39%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와 학부모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학부모도 1학기 급식비에 납득이 될 듯함.
- 학부모와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.

2. 기타협의

가. 3월 초 지역봉쇄로 인한 미등교 학생의 급식비 환불에 관한 기준

- 위 기간에 지역봉쇄로 미등교한 해당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무부의 협조를 받아 100% 환급하기로 함.

나. 급식이용 신청학생의 1학기 미납에 따른 조치사항

- 현재 총 미납자 약 8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미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2학기 급식 신청 불가

다. 1학기 학사일정 변경으로 기납부된 학생급식비 조치사항

- 학사일정 변경으로(7월 14일→7월 12일)기 납부된 2일에 해당하는 급식비는 스쿨뱅킹 및 개인 계좌를 통해 100% 환급 예정임.

라. 급식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사항

- 2019년 급식업체 선정 관련 급식소위원회(2019. 5. 17.)의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급식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2년 연장 여부 결정하기로 함
- 2021학년도 2학기 급식만족도 설문 조사결과(평가점수 79점)에 근거하여 2년 연장 계약하기로 협의함.